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3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위성곤 · 이건태 · 허영
박희승 · 이연희 · 박정현
박지혜 · 윤준병 · 이개호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립·작성 및 배포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국가경찰

제1절 국가경찰위원회

제6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 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 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 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 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대 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자로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 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랫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⑦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 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가경찰의 조직 및 사무

제11조(국가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2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3조(국가경찰의 사무) 국가경찰은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절 경찰청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자치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시·도경찰

제1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요건 및 지휘·감독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수사부서장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요건 및 지휘·감독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수사부서장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소속으로 순찰대를 둘 수 있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

제22조(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를 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국가경찰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려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6절 치안분야의 과학기술 진흥

제2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경찰

제1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2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서 주로 거주·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

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한 결정

가.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사무, 장비, 통신 등 운영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치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바. 자치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사. 자치경찰에 대한 민원처리요구에 관한 사항

아.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자. 자치경찰의 고충심사,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과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요구에 관한 사항

카. 자치경찰 임무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

한 사항

타. 그 밖에 시·도지사, 자치경찰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2. 해당 시·도경찰청장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가. 자치경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경찰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협약의 체결 및 변경과 관련한
사항

나. 국가·자치경찰의 공동사무 수행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항

3. 해당 시·도경찰청장과 협력·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4. 자치경찰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3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
찰위원회는 제30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
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
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제33조에 따른 자치경찰본부에서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

제33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 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경찰본부를 둔다.

②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경찰대(이하 “시·군·구 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군·구를 통합·분할하여 관할하는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의 광역적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본부장 직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자치경찰본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자치경찰본부장) ①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으

로 보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본부장을 해당 자치경찰본부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해당 자치경찰본부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 있어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
3.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총경·자치총경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를 통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공모를 통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경찰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의 직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자치경찰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치경찰본부장의 직급기준·임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5조(자치경찰대장) ① 시·군·구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제37조에 따른 자치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보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우 자치경찰본부장과 해당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자치경찰대장의 직급기준·임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112종합상황실) ①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은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접수 및 처리, 상황의 분석·판단·전파,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12종합상황실에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112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응원 등을 지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112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치경찰의 사무) ① 자치경찰사무는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자치경찰은 지역 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마.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 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사.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 가출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 아.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
-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
 - 나.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

리

③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한하여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범죄의 중대성, 광역성, 연쇄성 등에 비추어 국가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규정된 범죄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폭력” 중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호, 제154조부터 157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 제4조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외한다.

마.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

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가. 「아동복지법」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노인복지법」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차. 「교통안전법」

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 「범죄피해자 보호법」

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 「경범죄 처벌법」

④ 제3항의 수사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무와 관련한 자치경찰의 권한과 의무는 국가경찰과 같다.

제38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협약안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협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역할분담에 따른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2. 사건·사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의견을 달리하여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기준, 협약 체결 및 제2항에 따른 표준협약안의 제정·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 및 평가) 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평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른 자치경찰대장은 상호 지원·협력 등을 통한 지방자치행정과 자치치안행정의 연계 및 공동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자치경찰의 직무 수행

제41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같은 법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7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는 “자치경찰본부·대 등 자치경찰관서”로 본다.
3. 제4조제5항·제6항,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대장”으로 본다.

4. 제8조의2 본문,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경찰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5. 제9조 본문 중 “경찰서”는 “자치경찰본부 또는 자치경찰대”로 본다.

6. 제11조의2제1항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7.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본부장”으로 본다.

제42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에 한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휴대한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사용일시·장소·대상 및 경위 등을 소속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즉시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휴대·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범죄 발견시의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제37조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증거물 보존 등 적절한 초동조치를 한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및 관련사무를 소속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검거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라 검거한 사람을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한 체포, 증거 확보 등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본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무를 인계받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제4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44조(상호 협조 및 응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

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자치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위하여 지원된 국가 혹은 자치경찰공무원은 지원을 요청한 국가·자치경찰관서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규모, 경비 부담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으로 정한다.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무선 통신망과 시설물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112 신고출동 및 지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112종합상황실로부터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소관 사무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출동·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출동을 지연한 경우 112종합상황실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자치경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경찰통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조례 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 및 운영에 관련

된 조례나 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때에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자치경찰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시·도 자치경찰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따른다.

제5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

제50조(예산과 처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③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신분·처우 등에 있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자치경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포함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치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
3. 제37조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자치경찰 활동을 위한 장비·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52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자치경찰사무 중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직무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89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제191조 규정에 의한다.

②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감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재의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시·도의 회의 의결에 대하여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단의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자치경찰지원관) 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자치경찰과 시·도와의 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지원관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59조(법률안 의견 제출) 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범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시·도의 경우 제1항의 시범운영 기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등 소속기관에 국가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범운영 기간 중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기관으로 전출한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출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가경찰관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인력수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전출입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⑥ 시범운영 관련 국가경찰공무원의 전출입 절차, 지원인력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은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본부로 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법보다 자치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